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2633 호

제출년월일 : 2021년 8 월 17 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법」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에 이를 반영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 함.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발췌문 별첨(참조)

1)「지방세법」 제74조

2)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1. 6. 10. ~ 2021. 6. 30.) 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”를 “자동차세로”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2020년 12월 31일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"란 체납 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.	**제4조(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**자동차세로**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관련법령

□「지방세법」 신구조문 대비

종 전	현 행 〔2020.12.29. 시행〕
제74조(정의)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"**균등분**"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 2. "**재산분**"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 3. "**종업원분**"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 4.~8. 생략	**제74조(정의)**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"**개인분**"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 2. "**사업소분**"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 3. "**종업원분**"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 4.~8.(현행과 같음)

□「지방세징수법」

제105조(체납처분의 유예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**성실납부자로** 인정될 경우
2. (생 략)

② ~ ⑤ (생 략)